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of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채진익* Jin-Ik Chae

목 차

| | |
|---|--------------------------|
| I. 서론 | IV.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 |
| II.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약정과 그 의의 | V. 결 론 참고문헌 |
| III. BPO의 데이터 관리와 책임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BPO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에 BPO의 약정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C 가이드라인을 소개함으로써 BPO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BPO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주제어〉 BPO 가이드라인, BPO 약정, URBPO, BPO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I. 서론

그동안 국제무역에서 전자무역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무역의 정보화는 지식정보화라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아직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완전한 전자적 환경과 그 기반의 구축에 대한 문제인데, 특정 추진체의 노력만으로는 전자적 환경의 인프라를 완전하게 구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이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 이용의 편리성과 그 효과의 불확실성이다. 즉 그동안 많은 애플리케이션 내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운용했지만 전 세계의 관련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시스템의 이용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또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서 습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SWIFT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무역의 발전을 위해 TSU(Trade Service Utility) 솔루션에서부터 현재 BPO(Bank Payment Obligation: 은행지급약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정보화 기반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BPO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URBP(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URBP 750E)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BPO의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의 BPO 고객약정에 적용되는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Documents No. 470-1251)을 2015년 8월 19일자로 제정하였다. 이는 BPO는 은행 간의 지급약정이기 때문에 URBP는 은행 간의 BPO 거래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의 BPO 거래약정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또 BPO를 제도적으로 정착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가이드라인을 일선 은행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적 혼란을 예방하고 BPO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업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 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이용과 관심에 있어서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CC가 제정한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발표자료와 더불어 SWIFT 및 ICC 등의 사이트,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¹⁾

II.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과 그 의의

ICC 가이드라인은 본문 제9조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래 표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정의, BPO의 개념, 은행 서비스, 고객의 BPO 거래 신청, 데이터의 유효성과 취급 등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ICC 가이드라인의 구성

| 조 문 | 내 용 | 조 문 | 내 용 |
|-----|---------------|-----|---------------------|
| 제1조 | 정 의 | 제6조 | 요금 및 수수료 |
| 제2조 | BPO의 개념 | 제7조 | TMA의 이용과 그 TMA의 가용성 |
| 제3조 | 은행 서비스 | 제8조 | 책 입 |
| 제4조 | 고객의 BPO 거래 신청 | 제9조 |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
| 제5조 | 데이터의 유효성과 취급 | 부 록 | |

1.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그 의의

통상적으로 무역거래당사자가 신용장거래를 비롯한 무역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관련 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예컨대 수입거래의 경우에는 수입거래약정을, 수출환어음의 매입거래인 경우에는 수출환어음의 매입약정 등 관련 외국환거래약정을 기본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통상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1) 본 연구와 연관되는 선행 연구로는 송경숙채훈(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2016)), 우광명(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016)), 임재욱(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2014)), 이봉수(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2016)), 채진익(URBPO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등(2013)), 한낙현·김영곤(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

다. 이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개별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채진익, 2015).

BPO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약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전자금융거래약정과 BPO 거래약정 및 그 개설신청서가 작성·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BPO 약정은 아직은 그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또는 은행마다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업무적 표준을 위해서 BPO 고객약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약정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그들 각각의 거래은행(채무은행과 수취은행)과 BPO 거래약정을 위한 계약적 관계는 쌍방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 약정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ICC는 'BPO 거래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BAFT, EBA, FCI, ICC & ITFA, 2016). 본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문장의 제시는 없다. BPO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그 이외의 은행 서류와 유사하고 관계 은행의 영역이며 소관 사항이다. 그러나 고객계약서 또는 그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category lists)를 제공한다.²⁾

BPO 거래에 있어서 본 ICC 가이드라인의 제시 목적은 은행이 BPO 관련 서비스 또는 상품(products)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은행들이 그들 고객과의 계약 또는 약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의 BPO 관련 서비스 또는 상품의 제공을 규율하는 조항은 BPO의 구체적인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기술되거나, 또는 기타 서비스에 추가하여 BPO 관련 서비스를 다루는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기술될 수 있다. BPO 고객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기술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ICC Guidelines, 2015; Document No. 470-1251 EOC).

우선 BPO는 은행 간의 관계만을 규율한다. 따라서 별도의 BPO 고객약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약정은 가능한 한 URBPO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자신의 고객에게 BPO의 기능과 개념, URBPO의 영향, 그리고 TMA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TMA의 기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은 본 가이드라인 제1조에서 제9조에 규정된 내용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표제에서의 제목 또는 분류는 사실상 참고용이며, 그 BPO 약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이드용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BPO 관련 서비스 또는 상품은 각 은행에 따라 다르며,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경쟁영역에 속한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의 부록(appendix)에 SWIFT

2) [www.iccwbo.org/Advocacy-Codes-and-Rules/Document-centre/\(/2016/12/27\)](http://www.iccwbo.org/Advocacy-Codes-and-Rules/Document-centre/(/2016/12/27)).

TSU를 위해 2009년 5월에 초안된 은행의 상품명세가 목록되었다.

2. BPO 거래를 위한 고객약정

1) BPO 약정과 그 개념

국제무역계약에서 결제방법으로 신용장이 약정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위한 개설약정을 하게 된다. 이에 거래은행은 그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정해진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관련 약정서류를 접수하고 약정하게 된다. 그 약정서류 중에는 담보서류도 포함된다. 즉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개설의뢰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BPO 약정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BPO도 매수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인 경우)이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같이 그 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BPO 약정서류에 추가하여 그 BPO 결제대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서류를 접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BPO는 아직은 거래당사자에게 익숙한 제도가 아니고, 또한 별도의 'BPO 거래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URBP와 함께 이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PO 약정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URBP 제6조 a항에 따라 BPO는 그 기초 무역계약과는 분리·독립적이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본 ICC 가이드라인 “제8조(책임) 제1절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URBP 제7조 a항에 따라서 참여은행은 데이터로만 거래하며, 상거래계약, 서류, 또는 그 데이터 또는 서류가 관련 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그 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BPO 고객약정에 서명함으로써, 당해 은행이 그 기초 무역거래에 개입하지도 않으며, 또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거래고객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2(a)(b)(c)).

BPO 거래약정에 따라서 개설된 모든 BPO는 URBP가 적용되며, 고객은 그 자신의 상거래계약과 URBP의 상충 또는 모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거래고객(개설의뢰자)이 은행에 BPO의 개설약정을 요청한다면, 그 고객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된 때부터 또는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그 편입된 시점부터 그 채무은행은 그에 상응하는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 채무은행이 데이터의 매치통보를 접수하거나 또는 그 개설의뢰자부터 데이터 미스매치(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수리통지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의뢰자는 자신과 은행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해 BPO의 지급조건에 따라서 그 채무은행에 상환의무를 진다(채진익, 2016; ICC Guidelines Sec. 2(d)(e)(f)).

그리고 거래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는 전적으로 URBPPO의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거래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는 그 시점에서 TMA에 적용되는 기준(기능)과 규약에 따른다. 은행이 개설의뢰자에게 그 데이터 미스매치의 명세를 통지하는 경우, 당해 개설의뢰자는 그 미스매치의 통지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은행이 개설의뢰자의 그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한 수리통지를 접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2(g)(h)).

마지막으로 은행은 TMA로부터 통지받은 데이터의 정확한 비교 결과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BPO 관련 은행의 모든 지급약정은 그 BPO의 조건 또는 당해 개설의뢰자와 은행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 금액과 기간에 제한된다(ICC Guidelines Sec. 2(i)(j)).

2) BPO 서비스 약정

본 I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은행이 자신의 거래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약정하는데 있어서 은행은 자신이 제공하는 BPO 관련 서비스의 유형(종류)과 그 서비스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은 그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고객의 신용위험 또는 참여은행의 신용위험에 노출 여부 및 그 정도가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그 서비스는 프로세싱 또는 추심 서비스에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그 위험이 특정 상품에 해당된다는 조항을 BPO 고객약정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언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ICC Guidelines Sec. 3(a)).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BPO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은행은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명시하고, 또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3(b)).

그리고 그 고객약정은 은행의 책임(예컨대 고객이 은행에게 발송한 메시지 시간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을 분명히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객이 세계 협정시(UTC)³⁾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당해 은행이 고객이 지

3) “협정 세계시” 또는 “UTC”는 전기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장치에 사용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정의된 국제적인 시간척도(국제표준시)를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GMT(그리니치 표준시)에 상응하고, BPO를 위해 적용되는 표준시이다(URBPPO Art. 3)

정된 일정(event)에 따라 행동하거나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다(ICC Guidelines Sec. 3(c)).

3. BPO 거래신청

은행에서는 그의 고객과 BPO 거래를 위한 거래약정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는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즉, 은행의 BPO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BPO의 개설신청을 하게 된다. 본 ICC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즉, 은행은 고객(개설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개설의뢰자의 신청서식을 고안해야 한다. 은행은 당해 개설의뢰자의 신청이 취소불능이라는 것과 은행이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 조건변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그 개설요청에 따라 은행이 조치하는 행동에 대한 개설의뢰자의 승인이 포함되도록 한다(ICC Guidelines Sec. 4(a)).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즉 거래 참조번호, PO 번호, 매수자의 명칭과 국가, 매수자 거래은행의 은행 식별코드(BIC), 매도자의 명칭과 국가, 매도자 거래은행의 은행 식별코드, 채무은행, 수취은행, 금액과 통화, 물품과 그 수량, 지급조건, 요구 데이터(상업송장, 운송, 보험, 증명, 기타 증명), 유효기일, 연락처, BPO 준거법, 수수료 등이 있다(채진익, 2016; ICC Guidelines Sec. 4(a)).

그리고 BPO 고객약정서에는 은행과 고객 간의 데이터의 전송 요건을 기술해야 한다. 예컨대 본 데이터의 전송은 독립적인 은행 전자플랫폼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다거나(이 경우에 그 플랫폼의 이용조건은 조건변경을 요청 가능), 더욱이 종이 형식(mode)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별도의 분명하고 간결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거나 또는 부록으로 추가될 수 있다(채진익, 2016; ICC Guidelines Sec. 4(b)).

만약 은행이 특정한 거래 또는 BPO 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거래고객에게 확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의무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ICC Guidelines Sec. 4(c)).

Ⅲ. BPO의 거래 데이터의 관리와 책임

1. 데이터의 유효성과 그 취급

BPO에서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데이터 셋의 제출을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은 그 유효기일(협정 세계시(UTC) 23시 59분 59초) 내에 TMA에 제시되어야 한다(URBPO Art. 8(a)(b)). 그 데이터의 제출은 완전한 데이터로 은행의 영업 여부에 무관하게 데이터가 수취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ICC, 2013).

여기에서 BPO의 유효기일은 데이터 제출을 위한 최종 기일이며, TMA의 매칭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기일이 아니다. 본 조항은 UCP 600 제6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환경에서 데이터의 취급은 규정된 영업시간 내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은행의 제약을 제거한다. 그리고 UTC의 사용은 글로벌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표준 타이밍 프로토콜의 채택을 허용한다. 그 유효기간 이후에 데이터 셋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미스매치가 된다(채진익, 2013a; ICC, 2013).

본 ICC 가이드라인에서는 BPO의 데이터 거래에 대해 은행과 거래고객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기밀 데이터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및/또는 그 기밀 데이터의 공개가 허용되는 범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를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 거래고객에게 BPO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이외의 기초 무역거래에 관련하여 제공된 고객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그 이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ICC Guidelines, Sec. 5).

URBPO 제12조⁴⁾의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에 따른다(또한 제8조(책임) 3항(i)(a)). 참여은행이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URBPO 제9조(c)에 따른다. 즉, TMA에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초 무역거래에 관련된 거래고객(매수자 또는 매도자)로부터 접수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BPO 거래는 은행이 적용하는 모든 제재 또는 기타 법적 또는 규제사항을 위반해서

4) 참여은행은 다음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 매도자 또는 매수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 (ii) 서류,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 관련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또는 iii)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어떠한 데이터에 언급된 그 이외 모든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태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URBPO 제12조)..

는 안 된다. 은행은 기본 계약서의 복사본 또는 무역서류를 포함하여, 조사목적으로 그 거래고객으로부터 더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해당되는 제재규정, 예컨대 UN, US, EU 등과 법적 또는 규제사항의 준수에 관한 그 표준 문언을 명시할 수 있다.

거래고객은 은행에 제출하는 데이터가 그 기초 무역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셋의 제출과 관련하여 그 데이터가 선적서류상에 기술된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데이터 대조를 위해서 TMA에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지체 없이”에 대한 은행의 요구범위,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대조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다.

2. TMA의 이용과 가용성

1) TMA의 운용

URBPO 제3조에서는 “TMA”를 “참여은행이 TMA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처리 데이터 매칭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workflow application)을 의미한다. TMA는 참여은행으로부터 접수한 TSMT 메시지를⁵⁾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그 메시지 상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대조한 후에 관련 모든 TSMT 메시지를 각각의 참여은행에 전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MA는 BPO 거래에서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의 매칭 엔진이며 워크 플로우 솔루션이다(채진익, 2015).

URBPO는 참여은행과 TMA 간 교환되는 메시지는 ISO 20022 TSMT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TSU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메시지는 금융기관 간 또는 금융기관과 TSU 간의 이용을 위해 디자인되었다(채진익, 2013a; SWIFT, 2011). 금융기관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약정된 절차 표준을 사용한다(swift.com, 2013) 따라서 URBPO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모든 TMA는 URBPO 제4조(메시지 정의)에 정의된 대로 최소한 ISO 20022 TSMT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메시지는 BPO와는 직접 관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워크플로

5) “무역서비스 관리(TSMT) 메시지” 또는 “TSMT 메시지”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무역서비스 관리 비즈니스 분야로 발행되는 ISO 20022 메시지 유형을 의미한다(URBPO 제3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은행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TMA 간 정보교환과 관련 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특별히 고안된 50여종의 ISO 20022 TSMT 메시지가 있다(채진익, 2013b; ICC, 2015).

우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또한 승인과 보고를 포함한다(채진익, 2013b; ICC,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에는 물리적인 종이서류 대신에 무역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제시된다. 이미 기술된 표준 포맷인 ISO20022 TSMT를 이용하여 TMA라는 특별한 목적의 플랫폼상에서 자동적으로 매칭 프로세스가 이행된다. 그 매칭은 TMA의 '설정된 베이스라인'을 근거로 이행된다. 참여은행만이 이들 프로세스를 위해 TMA에 접속할 수 있다(BAFT et al. 2016).

즉, 매도자는 약정된 목적지로 물품을 선적하여 배송하고, 그 이후 매도자는 그의 거래은행에게 그 선적과 송장 데이터를 제시한다. 한편 그 거래은행은 전자매칭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TMA에 발송제출하며, 당해 TMA는 그 데이터를 대조하여 매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매치결과와 보고서를 채무은행(매수자의 거래은행)에 발송한다. 매수자는 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매치 보고서를 접수하는데, 만약 미스매치(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스매치의 수리를 요청받는다. 매도자의 거래은행은 매도자에게 성공적인 데이터 셋 매치를 확인한다(ICC, 2016).

2) TMA의 약정

ICC 가이드라인에서는 약정된 TMA는 은행이 소유한 전용 시스템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URBPO 제1조 a항에 따라 BPO 거래의 모든 참여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동일한 TMA를 이용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7(a)). 그러나 BPO가 정착되면 은행 자체의 TMA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BPO 거래에서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용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 데이터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국의 각 은행의 소유한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일치성 여부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PO 제도가 정착되면 각 은행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참여은행은 TMA의 제공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의 서비스 제공은 적절한 시기에 당해 TMA의 사정(가용성)에 따를 것이다. 은행은 그 별도의 계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해당 거래시점에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TMA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은행의 입장에 대해서는 본 ICC 가이드라인 제8조 제3(i)(b)의 주석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7(a)(b)(c)).

은행은 데이터의 송수신에 있어서는 TMA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독립체로서 ‘제출은행’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은행을 이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출은행이 요청받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 ICC 가이드라인 제8조 제3(e)항에 다루고 있다(ICC Guidelines, Sec. 7(d)). 은행이 거래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제3의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고 본다.

은행은 거래고객이 제출한 데이터는 완전·정확하고 진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TMA로부터 접수한 데이터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매치 또는 그 미스매치를 명시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 또는 데이터 셋의 매치 보고서는 베이스라인의 성공적인 설정 또는 데이터 셋 제출에 대한 데이터 매치의 결정적인 증거로 신뢰하거나, 또는 두 베이스라인에서 또는 데이터 셋의 제출에서 확인된 미스매치에 대한 정확한 목록의 결정적인 증거로 신뢰할 권리가 있다(ICC Guidelines, Sec. 7(e)).

URBPO에 따라 은행은 데이터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거래에서 거래고객의 역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ICC Guidelines, Sec. 7(f)).

그리고 은행과 고객 간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과 인증요건이 요구된다.

3. 책임,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책임

URBPO 제10조 a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은행은 베이스라인이 “설정된” 때부터 구속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채무은행은 베이스라인이 설정되었을 때 BPO가 그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되는 때, 그리고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을 조건 변경하여 편입되는 때에 그 BPO에 근거하여 취소불능으로 구속된다. ICC 가이드라인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URBPO 제6조 a항(은행지급의무 v. 계약)에 따른 은행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의 약정도 불구하고, 은행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존재하는 기초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BPO 관련 고객 서비스의 약정과 관련하여 그의 고객에 대한 은행의 책임제한은 BPO 고객약정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ICC Guidelines, Sec. 8(a)(b)).

그리고 ICC 가이드라인 제8조에는 다음 사항은 그 서비스 조항과 관련하여 은행의 잠재적인 의무 또는 책임과 관련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결

정하는 URBPO 관련 조항이 인용된다. 이는 다음 사항의 결과로 입었거나 또는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거래고객 또는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 (a)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에 규정한 내용으로 매도자 또는 매수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 서류,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 관련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또는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어떠한 데이터에 언급된 그 이외 모든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태이다(URBPO Art. 12). 이 점에 대하여 본 규칙 제9조 c항(참여은행의 역할)에서, 은행은 참여은행이 TMA에 제출한 모든 데이터는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참여은행의 의무를 고려해야 URBPO(ICC Guidelines, Sec. 8(c)).
- (b) TMA의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한 TMA 또는 그 서비스를 은행 또는 그 이외 다른 참여은행이 이용 불가능(URBPO 제14조), 그리고 모든 기초 무역거래, 베이스라인 또는 BPO에 관련되는 모든 메시지의 송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에 야기되는 지연, 멸실, 데이터 손상 또는 기타 오류(errors)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이다(ICC Guidelines, Sec. 8(c)(i)).
- (c) URBPO 제13조에 기술된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테러 행위, 또는 모든 파업 또는 직장폐쇄 또는 은행 자신의 통제 ... 또한 은행은 자신의 영업이 재개되면 채무은행으로서 그 영업이 중단된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BPO의 약정 금액을 수취은행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의무는 존속된다는 것을 승인할 것을 고객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URBPO Art. 13 참조).
- (d) 어느 참여은행이 무역거래, 베이스라인 또는 BPO와 관련하여 TMA를 통한 데이터 또는 메시지의 매칭, 프로세싱, 취급, 전송 및/또는 대조에 관계있는 은행에 무슨 이유이든, 즉 모든 오류, 누락, 채무 불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 TMA 또는 그 TMA가 제공한 서비스의 불이행 또는 불가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 본 위험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당해 은행은 자신에 해당하는 TMA의 책임한계를 명심해야 한다.
- (e) URBPO 제15조 c항에 기술된 준거법, 현재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결정(ruling)으로 은행이 본 고객약정과 관련한 BPO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모든 메시지 또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조

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것(ICC Guidelines, Sec. 8(c)(i)/f).

- (f) 그 대리은행이 지시은행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포함하여 당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지시은행의 대리은행(또는 다른 사람)의 활용, 또한 은행은 대리은행의 사용에 대해 책임의 분담 여부를 고려하기를 바랄 수 있으며, 그 대리은행의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무역거래에 관련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이 그들의 거래은행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이다.
- (g) 수시로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경우에, BPO 규칙, TMA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건, 또는 준거법, 규제 또는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은행, 고객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은행, 또는 은행의 플랫폼 또는 그의 데이터의 수작업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처리이다.
- (h)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행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은행은 주의와 기술(care and skill)의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 (i)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정도의 손실위험을 분담시키는 고객의 책임범위를 약술할 수 있다. 더욱이 은행은 고객이 그의 요청으로 BPO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은행 또는 그의 직원, 임원, 고용자 또는 대리자에 의해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수준을 고려하기를 원할 것이다.

1) 준거법 및 재판관할

URBPO 제15조 a항에서는 BPO의 준거법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약정된 채무은행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장소의 준거법으로 한다. URBPO 제2조 a항에 따라서, URBPO 제15조 a항에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 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CC Guidelines, Sec. 9(a)).

각 은행은 그의 고객과 BPO 고객약정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명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특정 고객과 이미 그들의 다른 비즈니스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ICC Guidelines, Sec. 9(b)).

그리고 BPO 고객약정은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원과 그 장소, 아니면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BPO 고객약정은 분쟁해결의 메카니즘, 그리고 그 해결기관의 장소 및 언어를 규율하는 법규를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C Guidelines, Sec. 9(c)).

IV. ICC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그 시사점

1. BPO 상의 공급체인의 개념과 그 의의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이동에 대한 금융흐름을 관리하는 공급체인금융의 중요성은 크다. 이 프로세스에서 은행은 무역결제뿐만 아니라, 신용 및 자금 지원에 개입한다.

이와 같은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간소화·자동화하기 위해 SWIFT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융공급체인이란 무역거래의 전 프로세스와 기업의 현금·예금 및 운전·자금 등을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매수업자의 관점에서는 구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 과정을 말하며, 매도업자에게는 주문에서 대금회수 및 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이클이다(채진익, 2013a; bolero.net, 2011). ICC와 SWIFT에서 의미하는 "공급체인금융"은 구매주문에서 그 결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환경의 무역결제 프로세스이다(채진익, 2013a).

SWIFT에서 BPO라는 글로벌 공급체인금융의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함에 따라 은행의 지급약정에 신용을 공여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은 일반적인 형태의 진일보된 공급체인금융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Andre Casterman, 2010).

국제무역에서의 금융제도가 전자무역 기반의 새로운 무역결제제도인 BPO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신용장의 조건부 지급결제시스템과 유사하게 BPO는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취소불능 지급약정에 근거하여 일람급 또는 연지급으로 개설된다. 전자매칭 플랫폼상에서 무역거래 데이터의 매칭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BPO의 취소불능 지급약정이 발효된다(BAFT et al. 2016).

BPO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베이스라인은 금융담보의 첫 번째 근거를 제공한다. 단, 수출자가 그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베이스라인의 설정은 수출자가 물품을 준비하여 선적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자는 성공적인 데이터의 셋 매칭을 위한 데이터 셋을 제시하며, 그 채무은행은 지급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BPO는 구매주문서를 근거로 한 선적전 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자와 수취은행 간의 금융약정은 본 금융을 위한 계약적 근거가 될 것이며, 채무은행과 수취은행은 URBPO와 TMA 약정에 따른다(BAFT et al. 2016).

특히 연지급 약정의 BPO는 무역금융거래에서 참여은행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공급체인금융의 지원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BPO는 단

순한 지급결제 매커니즘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거래은행을 통한 SCF 솔루션의 지원수단으로 수용된다. BPO는 선적 전후 모두 SCF의 기회가 제공된다(BAFT et al. 2016).

BPO는 수입자, 수입자의 거래은행(채무은행), 수출자, 그리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수취은행)을 참여시키는 4-코너(corner) 모델을 이용한다. BPO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들은 파트너(partner) 또는 환거래은행으로서 서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은행은 그들 각 거래고객(거래처)의 영업실황에 정통하며, 통상적으로 BPO 거래에 따른 지급약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 각 거래고객에게 적절한 신용한도(credit facilities)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BAFT et al. 2016).

따라서 BPO는 신용장거래에서 누릴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운용된다. 그러나 BPO는 항상 단일의 거래에 관계한다. 단일의 거래는 다수의 BPO를 포함한다. 각각의 BPO는 한 채무은행의 채무(지급약정: obligation)이다. 단일 거래에 다수의 BPO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채무은행 간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다수의 채무은행이 단일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은행의 지급 부담액은 전체 BPO의 총액에 대한 각 채무은행의 BPO 금액에 비례한다(ICC, 2016).

2. 수출자를 위한 무역금융과 서비스

1) BPO 무역금융

선적 전 금융은 물품의 제조과정과 그 포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되며, 본 금융은 베이스라인의 매치에 따라 지원되는 수출자의 한도 또는 신용한도를 근거로 하여 지원된다. 또한 베이스라인 매치에 따라 BPO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경우 그 위험은 BPO 채무은행이 부담할 것이다(ICC Guidelines, Appendix).

그리고 선적후 금융은 운전자금을 최적화하거나 또는 매출채권회전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된다. 본 금융은 거래 데이터 셋의 매치로 지원되는 수출자의 한도 또는 신용한도를 기반으로 수출자에게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의 할인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거래 데이터 셋의 매치로 지원되는 BPO를 근거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경우도 그 위험은 BPO 채무은행이 부담할 것이다(ICC Guidelines, Appendix).

2) 무역관리 서비스와 BPO 확인

무역관리 서비스는 수출자의 거래내용을 은행 측에서 관리하는 수출자 거래은행의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구매주문 관리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여 선진화된 무역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용 무역포털과 같은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front end application)을 통한 제공에 달려 있다. 그 부산물은 수출서류의 준비이다(ICC Guidelines, Appendix).

그리고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자(수익자)는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하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더 확실한 대금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통지은행을 포함한 제3의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은행의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과 고객 간(수익자)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약정을 하게 된다. 반면 BPO는 수입자의 거래은행과 수출자의 거래은행 간의 취소불능의 지급확약이다(Vishal Chaturvedi, 2013). 따라서 BPO는 신용장의 경우처럼 “확인”될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은행은 수출자와의 거래약정에 BPO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이후 BPO가 수취되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은 채무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ICC, 2012).

수출자는 채무은행의 위험 및/또는 국가 위험이 해소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취은행은 그 신용확인을 약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해외 국가에 있는 채무은행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비하여, 제시되는 모든 데이터가 매치되는 조건으로 수취은행으로부터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다(ICC Guidelines, Appendix).

3) 추심 서비스 및 역팩토링

추심관리 서비스는 수출자의 추심거래를 관리·기록하는 그 거래은행의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추심거래에 따르는 수취채권 및 대금추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회환추심과 유사). 그 대금결제는 TSU에서 데이터의 매칭을 통한 사전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람불로 지급되거나 또는 연지급으로 만기일에 자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본 약정은 수출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거나 또는 그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다(ICC Guidelines, Appendix).

그리고 역팩토링 금융있으며, 이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제공된다.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근거하여 할인한도를 제공받는다. 이용가능한 그 금융금액은 매치/승인된 상업송장을 근거로 한다(ICC Guidelines, Appendix).

3. 수입자를 위한 무역금융과 서비스

BPO를 결제조건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그 거래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 채무은행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수입자는 무역 데이터의 매칭이 성립된 후에 이루어진 연지급 약정을 그 BPO에 근거하여 수출자에게 선급하도록 그의 거래은행(채무은행)에 지시할 수 있다. 그 지시를 받은 채무은행은 연지급 기간 동안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수취은행 앞으로 BPO 금액을 선급한다. 따라서 그 수출자는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그 수입자는 그 BPO에 추가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BAFT et al, 2016).

그리고 BPO 만기일 후에 수입자가 요청하는 금융이다. BPO의 만기에 수입자는 그의 거래은행(채무은행)에 만기되는 그 BPO를 결제하기 위해 일정한 추가기간 동안 신용(신용한도)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금융은 수취은행과 채무은행 간의 BPO의 취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채무은행은 그 지급만기에 그 BPO 금액을 완전히 지급한다. 그러나 수입자와 채무은행 간의 금융약정에 근거하여 채무은행은 수입자로부터 그 약정이 후에 BPO 결제자금으로 지급된 자금을 금융 수수료(이자)와 함께 회수할 수 있다(BAFT et al, 2016). I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은 다음과 같다((ICC Guidelines, Appendix).

우선, BPO 개설이다. 국제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에게 지급확약을 해야 하는 수입자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자의 거래은행(및/또는 BPO 채무은행)이 그 BPO의 개설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및/또는 BPO 채무은행)은 그의 장부에 우발채무로 기장한다. 그리고 그 개설 이후에 제시되는 데이터 셋이 매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은 베이스라인에 기술된 대로 일람급 또는 기한부가 될 수 있다.

둘째, 수입자 금융이다. 수입자에게 국제거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며, 매입채권일수(Days Payables Outstanding)를 연장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제공된다. 이는 거래 데이터 셋의 매치를 근거로 수출자는 일시불(일람급)로 지급받으며, 수입자는 사전에 약정된 기간까지 연지급이 허용된다.

셋째, TMA 지급결제 서비스이다. 이는 수입자의 TMA를 통한 지급결제된 내용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관리하는 그 은행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외상매입금, 데이터 매칭, 하자통지 및 공급자에 대한 자동승인된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회환추심과 유사하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다). TMA에서 데이터의 매칭이 성립함으로써 대금지급이 자동적으로 이행된다. 대안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

입자가 발행한 별개의 지급지시를 수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관리 서비스이다. 수입자의 무역거래 내용을 그의 거래은행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이는 주문관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의 제공수준은 전용 무역포털과 같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공에 달려있다.

4. ICC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운용과 그 시사점

BPO를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무역결제 방법으로 도입된 BPO는 시대적 요구이며, 또한 현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생각된다. 그런데 BPO의 정착발전을 위해 URBPO의 제정과 ICC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본 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소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그 관심과 이용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본 제도는 시대적인 요구이지만, 당장 그 유용성과 이용효과에 대해 절실히 체감되지도 않고,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당장의 불편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도입될 제도로 보인다. 본 제도의 발전정착은 은행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행은 시대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재 SWIFT 신용장의 운용은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은행이 SWIFT 신용장의 운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SWIFT 신용장이 전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무역을 위한 국내 무역시스템이 잘 구축정보화되고 있고, 또 관련 기업들은 이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Utrade-Hub와 같은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을 포함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무역업무가 전자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을 이행하는 기관이 적극적·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전자적 기반의 BPO는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BPO의 정착을 위해 전자무역의 추진체인 ICC와 SWIFT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제도적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SWIFT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BPO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ICC는 이를 제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URBPO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ICC 가이드라인(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1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ICC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BPO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BPO의 정착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

이었다고 본다. BPO는 국제거래에서 채무은행과 수취은행 간의 지급약정이기 때문에, BPO에 적용되는 URBPO는 은행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BPO 거래를 위한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BPO는 그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BPO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과 조치와 더불어 현장에서도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적 및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ICC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은행과 그들 거래고객 간의 업무적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BPO의 정착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당사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SWIFT를 포함한 관련 기관, 특히 일선 은행 측이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 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ICC 가이드라인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BPO가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BPO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PO 제도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무역결제제도를 그 시대적 모습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킨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BPO는 그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V. 결론

그동안 국제간의 무역거래시스템을 전자기반의 선진·정보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황에서 SWIFT와 ICC는 협업하며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역결제제도로 BPO를 도입하였으며, 또 이를 위해 ICC는 URBPO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BPO는 은행 간의 약정, 즉 채무은행과 수취은행 간의 BPO이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URBPO는 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의 BPO 약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BPO 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BPO 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신용장방식과 유사한 약정절

차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BPO는 거래약정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거래고객과의 거래약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BPO는 아직도 도입 초기로 제도적으로 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업무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ICC 가이드라인은 BPO거래에서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ICC 가이드라인은 BPO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은행과 그의 거래고객 간에 체결해야 하는 거래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본 I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 BPO 거래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그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BPO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BPO의 정의와 개념, 은행 서비스, 고객의 BPO 거래신청, 데이터의 유효성과 취급, 요금 및 수수료, TMA의 이용과 그 TMA의 가용성, 거래당사자의 책임, 그리고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으로 구성되었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BPO 거래를 위한 약정 및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URBPO와 함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운용에 있어서는 URBPO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BPO 약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는 무역금융에 관한 약정일 것이며, 이 문제는 전통적인 무역금융제도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은 제도적으로 국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 약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ICC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BPO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PO 제도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무역결제제도를 그 시대적 모습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킨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BPO의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BPO는 전통적인 무역결제방식의 대안으로 정착될 것이며, 그 효율성과 편리성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경숙·채훈(2016), “TSU/BPO거래의 특성과 신용장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국제상학」, 제31권 제2호, pp. 99~117.
- 우광명(2016), “TSU·BPO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6호, pp. 283-299.
- 임재욱(2014), “SWIFT의 Trade Service Utility & Bank Payment Obligation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pp. 177-196.
- 이봉수(2016), “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3호, pp. 3-21.
- 채진익(2015),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 채진익(2013a),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p.171, 172, 176.
- 채진익(2013b),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 119, 126, 129, 130.
- 채진익(2015), “TMA의 운용과 주요 BPO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5권, p. 123.
- 채진익(2016), “BPO의 제도적 운용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p. 180, 151, 152.
- 한낙현·김영곤(2013), “무역결제수단인 TSU/BPO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pp. 141-175.
- Casterman, A.(2010), “Collaborative supply chain finance”, Dialogue Q4, SWIFT, p, 18.
- Chaturvedi, Vishal(2013), “Bank Payment Obligation: The New Global Standard for International Trade from SWIFT & ICC”, *The Financial Services Blog*, available at blogs.oracle.com/financialservices/entry/bank_payment_obligation_the_new(Jan. 31, 2017).
- BAFT, EBA, FCI, ICC and ITFA(2016), “Standard Definitions for Techniques of Supply Chain Finance”, *Global SCF Finance Forum*, p. 63, 64, 67, 68.
- ICC(2012), “The Bank Payment Obligation: Capital & Accounting Treatment”, *Document No. 470/1204*, p. 4.

ICC(2013),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lication No. 751E, p. 55, 89.

ICC(2015),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ICC(2016), “Bank Payment Obligation” Business Briefing, *ICC Banking Commission Meeting Mexico City*, p. 5, 13, 20, 48, 53.

SWIFT(2011), “The Value of SWIFT to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sue 6 Q2, p. 8.

[http://www.swift.com/our-solutions/corporates\(2016/9/26\)](http://www.swift.com/our-solutions/corporates(2016/9/26))

<http://www.iccwbo.org/Advocacy-Codes-and-Rules/Document-centre/2016/12/27>.

[http://www.swift.com/news/standards/ISO20022_Business_Model_reviews\(2013\)](http://www.swift.com/news/standards/ISO20022_Business_Model_reviews(2013))

[http://www.bolero.net/solutions/financial_supply_chain.html\(2011\)](http://www.bolero.net/solutions/financial_supply_chain.html(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ts Implications of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Jin-Ik Chae

Abstract

A bank payment obligation(BPO) has been introduced as a new alternative instrument for trade payments based on a technology and data-driven mechanisms aimed at facilitating an electronic trading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he BPO is governed by URBPO which was in effect as of July 1, 2013. The URBPO only applies to inter-bank relationships because the BPO is bank-to-bank payment obligation, not a bank-to-customer obligation. The URBPO does not cover the interaction between a bank and their customer. For this reason, the standard bank-customer guidelines on BPO agreements were required to prepare the agreements between the banks and their customer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established “ICC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BPO Customer Agreements” for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BPO by supporting banks in creating contracts or agreements with their customers.

So, This study is to review its establishment purpos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ICC guidelines. This study wa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focusing mainly on the ICC Guidelines and the appendix.

〈Key Words〉 BPO, URBPO, BPO Agreements, ICC BPO Guidelines